

## PL과 불법행위

글·임동무 대표 KMBS

### 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 : tort)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운송회사의 트럭운전사가 과음으로 운전하다 짧은 여성을 치어 부상을 입힌 경우가 될 것이다. 운전사는 치료비와 기타의 재산적 손해 및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거나 아니면 불구가 되었을 경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운전사가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를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민법은 운전사의 사용자 즉 운송회사에 운전사와 연대로 해서 이 경우에는 부진정 연대책무로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가해자측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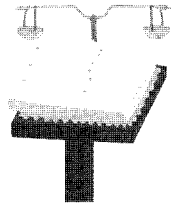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인신손해의 경우에 대해서는 특히 고용주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즉 민법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

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이 법률은 가해자 측에서 자기 및 운전사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가해자측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더욱이 운전사와 고용주가 똑같이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장을 위하여 자동차의 등록을 받은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과실책임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책임의 발생을 위하여서는 가해자에게 일정한 책임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의 제도는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더구나 손해의 발생과 위법행위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가해자 측에서  
자기 및 운전사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해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손해도 시  
시각각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이른바  
계속적 불법행위이다. 토지의 불법점거나 부당한  
채포 또는 감금행위 등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정  
당한 권리자가 본권의 소에 의하여 인도를 청구  
한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의 발생이 연  
속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나 지연된  
이자의 계산에 관하여 보통의 불법행위와는 달리  
취급을 한다.

한편 로마법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은 특히 위  
법성이 강한 경우에 한정되었다. 그래서 이와는  
따로 이에 준하여 손해배상의 채무를 발생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쓰레기를 도로에  
버리거나 떨어뜨린 물건에 의하여 손해를 끼친  
자의 책임, 여관의 사용자가 여객에 끼친 손해에  
대한 여관주인의 책임과 같은 것이다.

프랑스의 민법은 이를 계승하여 '불법 행위 및  
준불법행위'라는 구절을 두었으나 오늘날 실제로  
이 양자를 구별할 실익은 없다. 그래서 독일 민법  
이나 우리 민법에서는 현재 이러한 준(準)불법행  
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공동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joint unlawful act)란 수인이 공  
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각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를 부진정 연대책무  
라고 한다. 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  
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를 할 것을 교  
사한 자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는 공동행위자로  
간주한다.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  
게 하는 본래의 취지는 가해자들이 각자 행위의  
경중을 문제삼기 전에 피해자가 누구에게나 배상  
금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  
게 함으로써 어느 상황이든 간에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함이다.

**불법행위능력**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능력(Deliktsfaehigkeit)  
이란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자연  
인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  
로 채용되고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우리나  
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인의 본질  
론에 직결하는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은 없다. 그러나 법인 실체설에 의하면  
법인도 당연히 불법행위능력은 가진다고 한다. 오  
늘날에는 후자가 통설적이라고 본다.